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계획 공고

1. 관련

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1.운용인력기준' 비고
나. 대한영상의학회 제270-014(2021. 12. 16.)호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 교육기관(대한영상의학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 '22년도 1회차 교육은 1월 초 교육기관에서 접수 예정이며, 접수일정 및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운용인력 지원시스템' (<http://match.radiology.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나. 교육대상: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수료한 품질관리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 만료예정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 수료증 유효기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시에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 상실,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려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다. 교육인원: 회차당 약 120명 내외

라. 교육일정: 상·하반기 총 5회 교육(상반기 3회, 하반기 2회)

마.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실시(붙임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보건의료과장), 강원도지사(공공의료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 의사협회

주무관 **오혜인** 행정사무관 **김태경** 의료자원정책과장 **송영조** 전결 2021. 12. 24.

협조자

시행 의료자원정책과-13865 (2021. 12. 24.)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64 팩스번호 044-202-3925 / wisvolent312@korea.kr / 대국민 공개